

일제하 한국법률가의 활동과 평가

최종고*

차 례

서 론

I. 대한제국시기의 법률가

1. 대한제국 관료출신
2. 법관양성소 출신
3. 일본유학 출신

II. 일제시기의 법률가

1.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
2. 보성전문학교 출신
3. 경성제국대학 출신
4. 일본유학 출신

III. 일제하 한국법률가들의 평가

결 론

*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한국인물전기학회장

서 론

조선왕국은 중국의 종주권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서의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언하면서 행정에서 분리된 근대적 사법제도와 이에 필요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1895년에 고종은 법부대신 서광범의 상주로 법관양성소의 설립을 윤허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도 전통적 하위 잡직(雜職)의 율관(律官)이 아닌 근대적 법률가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¹⁾ 한국보다 불과 20여년 먼저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명치유신(明治維新)을 성공시키고 서양식 부국강병에서 제국주의까지 모방한 일본은 청일전쟁(1895)과 러일전쟁(1904)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국과 만주를 합병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독일로부터 배운 선진 법률과 군사제도를 통해 법률가와 군인을 양성하여 식민지를 통치하려 하였다.

이러한 대변혁의 대한제국과 일제시기의 법률가는 한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법률가 세대이며, 따라서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학, 나아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주역들에 해당된다. 그동안 한국 법률가에 대한 연구는 집단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필자는 2007년에 낸 <한국의 법률가>(서울대출판부)에서 34인의 법률가, <한국의 법학자>(서울대출판부)에서 31인의 법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한 바 있다. 이번에 일제시기의 한국법률가를 총점검하는 작업을 하게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이 방면의 자료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고,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불완전함을 미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기구분과 인적 분류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일제 합병의 1910년 이전과 이후, 그리고 그에 따른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삼아보았다. 이 논문이 한국법조사의 정리에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최종고, 근대적 한국법률가상의 형성,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1982, 325~360쪽.

I. 대한제국시기의 법률가

1. 대한제국 관료출신

한국인 법률가가 임명된 1912년 이전에 구관직에서 법률관계 사무를 담당한 관료들이 근대적 법률가의 선구자들이다. 이들은 신식 법학을 교육받지 않고도 법률사무를 담당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한국법사에서 전통과 현대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한제국 관료가 어떻게 근대적 법률가로 ‘변신’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인물별로 살펴본다.

장석주(장박, 1849~1921)는 1883년 박문국에 근무하다 1892년 <한성순보> 주필을 지냈다. 1895년 법무 형사국장, 법률기초위원, 법무협관, 고등재판소장을 겸임했다. 법무대신에 임명되었다가 을미사변으로 파면되고 체포령이 내리자 일본으로 망명, 특별사면으로 귀국하였다. 1907년 대한협회 초대 회장, 1909년 흥사단에 응진(隆進)법률학교를 설립했다. 합방후 1910년 조선귀족령에 따라 남작 작위, 1912년 중추원 고문, 1920년 대성학회 회장을 지냈다.

윤학영(1863~?)은 1894년에 진사 급제, 외부 주사에 임용되었다. 1906년 법무 주사로 옮겨 1907년 법무 서기랑이 되었다. 1908년 개성구재판소 판사, 합방후 연임되었다. 1912년 해주지법 서흥지청 판사로 근무하다 1913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권병훈(1864~1940)은 1896년 양주군 세무사, 1903년 법관양성소 교관, 1905년 육군유년학교 교관을 지내다 1906년 충청남도재판소 검사, 1907년 황해도재판소 검사를 거쳐 1908년 원산지법 판사, 1909년 해주지법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한학자로 <육서심원(六書尋源)>이란 대저를 내기도 하였다.²⁾

신재영(1864~1931)은 1883년 일본에 파견되어 해관사무를 공부하고, 1885년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외아문) 주사가 되었다. 1895년 군무아문 참의를 거쳐 법무 검사국장, 1899년 법무 법무국장으로 승진하였다. 1908

2) 자세한 권덕주, <육서심원연구자료>, 해돋이, 2005;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 2007, 34~44쪽.

년 양주군수를 거쳐 평양공소원 판사. 합병후에도 경성공소원 판사로 재직하다 1912년 함흥군수로 전임하였다. 1918년 함북 고원군수로 갔다가 1923년 퇴임하였다. 구한말 사법관과 행정관의 교차를 보여준다.

이시영(1869~1953)은 18세에 급제하여 1887년 형조좌랑, 김홍집내각의 붕괴후 10년간 야인으로 있다가 1905년 외부 교섭국장, 1906년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중 일본인 보좌관들의 횡포에 맞섰다. 1907년 중추원 의관, 1908년 한성재판소장, 법부 민사국장, 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1910년 남만주로 이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초대 법무총장, 1945년 환국하여 초대 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하였다.³⁾

이용의(1874~?)는 1901년 법부 주사와 평리원 주사, 1908년에 영변구재판소 판사, 1909년 평양지법 판사가 되었다. 1910년 송화구 재판소 판사, 1912년에 신의주지청 판사로 전임하여 1914년 퇴직하였다.

김낙헌(1874~1919)은 1895년에 법부 주사로 출발하여 법부 검사, 판사를 역임하고 형사국장을 거쳐, 1906~9년 법관양성소 소장으로 있었다. 1908년 민사국장 이시영과 일본의 재판소를 시찰하고 왔다. 1911~18년 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퇴직후 중추원 부찬의를 지냈다⁴⁾.

최원순(1876~?)은 제주에서 태어나 1900년 제주목 주사로 있다 1906년 제주목재판소 검사, 1908년 동법원 판사가 되었다. 1912년 평북 희천군수, 1917~18년 평북토지조사위원, 1923년 제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미군정청에 의해 제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1950년까지 재직했다.

유갑수(1879~?)는 1901년 법부 주사로 임명되어 1906년 의주부 참서관, 의주시재판소 검사, 1907년 의주부윤 서리를 겸했다. 1908년 국채보상검사소 위원 및 대한협회 회원이 되었다. 1906년 공주지법 판사, 합방후 유임되었다. 1913년 퇴직후 공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홍승근(1888~1935)은 1907년 관립일어학교를 졸업, 그해 법률기초위원이 되고, 1908년 법부 서기를 거쳐 1909년 경성구재판소 검사로 임명되었

3) 이시영, <感時慢話>, 일조각, 1983;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대출판부, 2006(3판), 303~312쪽;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19~38쪽.

4) 최종고, 김낙헌의 <從宦錄>, <법사학연구> 11, 1990, 205~246쪽.

다. 1912년 부산지법 검사를 거쳐 춘천지청 판사가 되었다. 1915년 수원지청 판사, 1916년 검사로 다시 전직, 광주지청 검사, 1918년 대구복심법원 검사, 1923년 목포지청 검사, 1934년 평양지법 검사로 재직했다.

그 외에도 한말관료로 잠시나마 법률가의 직책을 맡은 인물로 신기선, 피상범, 이원궁, 이지용, 주석면, 윤치호, 유성준, 서광범, 홍종우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자료 및 지면관계로 생략한다.⁵⁾

2. 법관양성소 출신

가장 먼저 생각되는 이준(이선재, 1859~1907)은 대한제국 검사로서 활약이 눈부셨지만 일제시기 전에 사망했으므로 제외한다⁶⁾.

윤성보(1861~1917)는 1894년 진사에 급제, 1895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여 법부 주사에 임용되었다. 1896년 고등재판소 검사로 있다 한성부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었다. 1901년 법률기초위원을 지내고 평리원 판사가 되었다. 1904년 법관양성소 교관, 형법교정관으로 활동하고 1905년 법부 형사국장이 되었다. 1907년 함경북도관찰사가 되었다가 1908년 평양공소원 검사로 임명되었다. 한성재판소 판사로 전임하였다가 같은해 평안남도 강서군수로 부임했다. 합방후 평양공소원 검사로 있다가 1913년 평양복심원 판사로 전임하였다. 1917년 3월 고등법원 판사로 전임되었으나 이날 사망하였다.

이원국(1861~?)은 1896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법부 주사, 평리원 주사를 지내고 1903년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906년 한성재판소 판사로 승진하였다. 1908년부터 공주지법 판사로 있다가 합방후에도 유임되었다. 1912년 충남 비인군수가 되었고, 1914년 공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함태영(1873~1964)은 1895년 법관양성소 제1회로 수석졸업하여 1898년 고등재판소 검사로 임명되어 독립협회 등 사건으로 면관되었다가 1899년 재임명되었다. 합방후 1922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시무하다 해

5) 보충적으로는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1882, 336~351쪽.

6)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1~18쪽.

방을 맞았다. 1949년 심계원장을 거쳐 부통령이 되었다⁷⁾.

정낙현(1873~?)은 1895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1906년 충남도재판소 주사, 평리원 주사로 발령받았다. 1908년 진남포구재판소 판사가 되었다. 1913년 김천지청 판사, 1921년 강경지청 판사를 거쳐 대구지법 판사로 1924년 퇴직했다. 1925년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노홍현(1875~1940)은 16세에 진사에 급제, 1897년 법관양성소를 졸업, 경성지방재판소 서기를 겸하여 법관양성소에서 한학을 가르쳤다. 사법관 임용시험에 합격, 1900년에 홍산구재판소 판사로 시작하여 진주지원, 목포지원, 부산지법 판사로 있다가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 부산변호사회장이 되었다⁸⁾.

홍순용(1876~1932)은 1905년 법관양성소를 졸업, 1906년 한성재판소 주사로 출발, 1909년 대구지방재판소 판사, 1912년 백천군수로 전직, 1913년부터 해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홍면희(홍진, 1877~1946)는 1904년 법관양성소를 졸업, 1905년 충주재판소 검사, 1909년 변호사 개업, 1918년 만주로 망명, 1919년 상해 임시의정원 법제위원장, 1920년 의정원장, 1923년 국무원 법무총장, 1926년 국무령에 피선되었다. 1945년 임정요인으로 귀국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⁹⁾.

이우정(1880~?)은 1908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있다가 1909년 대구지법 안동구재판소 판사가 되었다. 합방후 1912년 안동지청 판사로 재직하다 1923년 퇴직하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이필은(1880~1931)은 1907년 법관양성소를 졸업, 대심원 서기로 있다가 공주구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었다. 1912년부터 공주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1914년 공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안병찬(1881~1921)은 1904년에 법관양성소를 졸업, 1905년 법부 주사를 지내며 을사오적의 참수를 간하는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올렸다. 제주도

7) 자세한 것은 김정준, <함태영웅 세계일주기>, 1957;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53~70쪽.

8) 아들 노영빈, 손자 노종상으로 3대 법조가족이다. 저서로 <신정문집>이 있다. 자세한 것은 김용달, 신정 노홍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지>, 1976.5; 김이조, 앞의 책, 65~71쪽.

9) 자세한 것은 김교창, 만오 홍면희 변호사, <대한변협회지> 1974.9. 김이조, <33인의 법조상>, 1999, 317~322쪽.

에 유배되었다 1906년 의병에 참여하여 9개월 투옥되었다. 메이지대학에 유학중 조선변시에 합격, 평양에서 변호사 개업, 1909년 안중근, 이재명의사를 변호하였다. 3.1운동 후 만주 안동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1920년 상해임시정부 법무차장, 1921년 고려공산당원으로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나 독립운동자금을 받아오는 도중 암살되었다.¹⁰⁾

김기정(1883~?)은 1908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경성재판소 서기로 근무하다 1910년 부산구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었다. 1912년에 의원면직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다 1916년부터 통영시에 근무했다. 1923년 다시 변호사 활동을 개시하고, 1927년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도민들과 충돌하는 ‘김기정사건’이 발생했다. 193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

이명섭(1887~?)은 1906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1912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했다. 법원서기 겸 통역인으로 근무하다 1914년 조선총독부 판사로 특별 임용되어 평양지법 영변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17년 신의주지청, 1921년 대구복심법원 판사, 1924년 경성복심법원 판사로 있었다 1934년에 퇴임하고 이듬해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5년 미군정청에 의해 경성공소원장으로 임명되고 1947년 서울고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1948년 법전편찬위원으로 활동, 1948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에 의해 11월에 고법원장직에서 퇴임하였다. 같은해 12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가 1950년 납북되었다.

이기찬(1887~1945)은 1907년 법관양성소를 졸업, 1908년 함흥지방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었다. 합방후 평양지법 판사로 있다가 1912년 경성복심법원 판사가 되었다. 1913년 사임하고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21년 조선변호사협회 창립에 참여하고 베이징에서 개최된 극동변호사대회에 참석하였다. 1924년 평양변호사회 부회장, 1932년 조만식과 함께 건중회(建中會) 간사로 활동했다. 1936년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참의를 맡아 세차례 연임하였다.

변영만(1889~1954)은 1905년 법관양성소를 졸업, 다시 보성전문에 다녀 2년후 졸업하고 광주지법 판사로 임명되었다. 1909년 한국의 사법권이 통

10) 자세한 최중고, <한국의 법률가>, 101~110쪽.

감부로 이관되자 사임하고 의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21년 북경 법대평양지역 국제변호사대회에 참가하였다. 해방후 성균관대학 국학교수가 되었고, 1949년 반민특위 위원장이 되었다.¹¹⁾

3. 일본유학 출신

한편 법학은 역시 신식 서양학문이기 때문에 직접 서양으로 유학갈 수는 없지만 일본으로 유학가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았다.

장헌식(1869~1950)은 1902년 도쿄제대 법학과를 졸업, 1903년까지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했다. 재판소와 대장성에서 견습하다 1903년 귀국, 1905년 학부 참서관이 되고 관립외국어학교 교장을 겸했다. 1907년 학부 편집국장 및 한성사범학교 교장이 되고 국문연구소 위원, 이어 한성부윤에 임명되었다. 1908년 법학협회 회장, 1910년 평안남도 참여관, 1919년 충청북도지사, 1921년 총독관방 사무관, 1924년 전남도지사가 되었다. 1926년 관계를 떠나 중추원 참의로 해방을 맞았다. 이왕직장관에 임명되고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병보석으로 석방되고, 1950년 8월 20일 사망하였다.

홍재기(1873~1950)는 유오대학의 전신 동경법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3년간 공부하고 1904년 귀국, 1905년 법부 법률기초위원, 법관양성소 교관, 1906년 한성재판소 판사, 1910년 법학협회 회장, 1913년 조선변호사회 회장, 1925년부터 강계,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해방을 맞았다. 1948년부터 정읍지원장으로 재직하다 6.25때 희생되었다.¹²⁾

최진(1876~1950?)은 1905년 간사이대학 법과를 졸업, 이듬해 법관양성소 교관, 창원부 참서관, 중추원 참의를 거쳐 1907년 변호사 개업, 1908년 법학협회 회원, 1913년 경성제2변호사회 회장, 1915년 <법학계>지 발행인이 되었다. 해방후에도 변호사로 있다가 납북되었다¹³⁾.

11) 변영만, <山康齋詩文抄> 용계서당, 1957; <변영만전집>상중하, 성균관대출판부, 2006;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250~258쪽.

12) 아들 홍종민 변호사의 자서전, <역사의 수레바퀴 속으로>, 역사편찬회출판부, 1992 참조. 홍재기의 유품은 손자 홍순길에 의해 서울법대 역사관에 기증되어 전시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39~52쪽.

유치형(1877~1933)은 1899년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 1901년 법무 법률기초위원을 지내다 190년 궁내부 회계과장, 1906년 궁내부 제도국 참서관, 1907년 수학원 교관과 보성전문 강사를 지냈다. 합방후 1911년 이왕직 사무관, 1913년 한성은행 사무관, 1902년 한성은행 취체역을 지내며 조용히 살았다.¹⁴⁾

석진형(1877~1946)은 1902년 와후쓰(和佛)법률학교(호세이대학 전신)를 졸업, 1904년 군부 군법국 주사로 근무하다 1905년 사립한성법학교, 사립양정의숙, 보성전문 강사를 거쳐 법무 법률기초위원에 임명되고 법관양성소 교관이 되었다. 1906년 내부 참서관, 부동산법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911년 경성전수학교 교유로 있다 사직하고 1913~18년 한성은행 지배인이 되었다. 1921년 전남 참여관, 1924년 충남도지사, 1926~29년 전남도지사에 재직했다. 퇴직후 1931년 단군신전 봉찬회 고문, 1934년 동아전보통신사 사장, 1939년 조선유도연합회 평의원을 지냈다.¹⁵⁾

유동작(1877~1910)은 1904년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05년부터 법률기초위원을 지내고 1906년까지 법관양성소 교관을 겸했다. 1906년 한성재판소 검사, 1908년부터 경성재판소 판사로 근무하였고, 서우학회, 대한학회, 서북학회 등에서도 활동하였다.

장도(1879~?)는 1899년 도쿄법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해 자리를 못잡다가 1904년 외부 번역관, 1905년 보성전문 강사와 평리원 검사, 법률기초위원이 되었다. 1908년 변호사 등록, 법학서도 내었다.

이면우(1879~?)는 1899년 도쿄법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해 어렵게 지내다 보성전문 및 법관양성소 강사, 1904년 한성재판소 검사, 평리원 판사가 되었다. 합방후에는 변호사로 지내고, 법학서와 논문도 발표하였다.

박승빈(1880~1943)은 주오대학에서 공부하고 귀국하여 광무학교 교사, 평양공소원 검사, 1910~25년 변호사, 1925~32년 보성전문 교장, 한글연구

13) 최순문 변호사의 부친으로, 선배로서의 선친을 말한다, <법조춘추> 65, 1969;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71~84쪽.

14) 유진오의 부친으로, 유진오의 제공으로 필자가 공개한, 유치형일기, <법학>(서울대) 24권 2호, 1983 및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66~91쪽.

15)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84~100쪽. 석진형은 한시와 소설도 발표하여 국문학계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에도 조예가 깊었다.¹⁶⁾

임영찬(1880~?)은 1909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대구공소원 서기로 있다가 1912년 판사에 특별임용되어 광주지법 고부지청 판사가 되었다. 1914년 검사로 전직해 1919년 목포지청 검사가 되었다. 1922년 광주지법 검사, 1928년 평양지법 검사가 되었다. 1936년 대구지법 검사, 1939년 광주지법 검사로 있다가 독직사건으로 형을 받고 사직하였다. 해방후 1947년 광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나진(1881~1918)은 1903년 메이지법률학교를 졸업하고, 1905년 법관양성소 교관, 1907년 평리원 검사를 겸했다. 1908년 대구지방재판소 판사, 1909년부터 경성지방재판소 검사를 지냈다.

양대경(1885~1963)은 1908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 법관양성소 교관을 거쳐 법학교 교수가 되었다. 1914년 광주지법 판사, 1917년 대구복심법원 판사, 1919년 대구서 변호사로 활동, 1946~50년 대법관으로 재임, 퇴임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¹⁷⁾.

이선경(1886~1915)은 1908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태극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법무 주사, 경성공소원 서기를 거쳐 1910년 공주구재판소 판사가 되었다. 1912년 강경지청 판사로 전임하였다 퇴임하고 그해 10월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오승은(1888~?)은 1916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 1920년 판검사 임용시험에 합격, 해주지법 검사로 임명되었다. 1923년 신의주에서 변호사 개업, 1925년 조선불교단 평의원이 되었다. 1930년부터 평안남도 도평의회 의원이 되었고, 1935년 금광매매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10월형을 받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었다. 해방후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단국대학교수를 지냈다.

이희적(1888~?)은 1914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16년 신의주지청 판사로 재직하다 1922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1936년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고, 1942년 마작을 하다 변호사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해방후

16) 황인철, 학범 박승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지> 1976.2; 김이조, 앞의 책, 80~86쪽.

17) 자세한 최중고, <한국의 법률가>, 2007, 111~125쪽.

서울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1949년 반민특위에 자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승우(1889~1955)는 1910년 대동법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전문 법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1917년 일본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했다. 1918년 일본 변호사시험에 합격, 도쿄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1919년 3월에 귀국,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21년 조선변호사협회 이사가 되고, 같은 해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회의에 허헌과 함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1927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 회장, 1930년 단군신전봉찬회 이사로 되기도 하였다. 1933년에는 보성전문30주년 기념사업회 상무이사가 되었고, 1934년에는 문일평과 함께 조선문기사정리기성회를 조직, 1935년에는 경성부회의원이 되었다. 1936년 조선총독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참의를 맡아 해방까지 3차례 연임하였다.

김영환(1894~?)은 1923년에 교토제대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26년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에 임명되어 1927년까지 검사대리로 근무했다. 1930년 경성지법 판사, 1937년 대구복심법원 판사, 1944년부터 해방까지 진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였다. 1945년 군산에서 변호사 개업,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시두(1894~?)는 1921년 교토제대 법학부를 졸업, 그해 검사대리로 시작하여 1922년 경성지법 판사가 되었다. 1932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 1935년 경성변호사회 상의원이 되었다. 1947년 법원조직법 전형위원이 되었다가 1949년 반민특위 재판에 변호인이 되기도 했다.

양원용(1895~?)은 1923년 교토제대 법학과를 졸업, 1926년 공주지법 판사, 1931년부터 대구복심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1942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5년 경성재판소 부수석판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납북되었다.

이상기(1898~?)는 1929년 도쿄상과대학을 졸업하고 1927년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 1931년 경성지법 판사에 임명되었다. 1937년부터 경성복심법원 판사로 활동하다 1944년부터 대구복심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해방을 맞았다. 1945년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1948년 법전편찬위원을 겸하였

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10월에 사임하고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남북되었다.

II. 일제시기의 법률가

식민지 조선의 사법관리는 모두 조선총독부의 관리로서 총독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 1912년 3월 19일에 반포된 제령 제4호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이 법적 근거였다. 법원은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구조를 가졌고, 거기에 검사국을 병치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1910년 10월 1일 제령 제6호 <조선총독부 판사와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을 제정하였다. 1920년대까지는 판검사의 부족으로 몇 특례규정을 두어 기존의 사법관리를 판검사에 임용하였다. 그리고 제국대학, 관립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의 법률학과를 마친 자는 조선 문관고등문관시험의 전형을 거쳐 판사와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1920년 7월 29일 제령 제 11호 <조선총독부 판사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에 따라 특별임용된 조선인 판사도 있었다. 지방법원 지청판사에 한하여 5년 이상 판임관 이상의 관직에 재직하면서 사법업무에 종사한 판임관 5급 이상인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고시에 합격한 자를 특별히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1934년부터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어지고 조선총독부의 판검사는 모두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만으로 임명되었다.

일제하의 형사제도는 대체로 일본의 형법(이른바 依用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따랐지만 실제로 조선에서의 검사가 누리는 권한은 일본 본토에서 보다 컸다고 보여진다. 강제처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며 빠른 처분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전에 압수, 수색, 검증, 구인, 증인심문, 감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 검사는 어떤 피의자도 10일간 구류할 수 있었다.

일제가 조선인 판검사에게는 시국관련 사건을 담당시키지 않았다고 알

려져 왔는데, 천황에 대한 불경죄, 전쟁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죄 사건 등에도 조선인 판검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⁸⁾ 또한 1930년대 전시경제사범에 대한 재판에도 조선인 판검사가 점점 더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1947년에 나온 한 일본자료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41년까지의 조선총독부 산하 한국인 사법관리의 숫자는, 1910년 판사 71명, 검사 6명, 변호사 30명, 1935년 판사 38명, 검사 81명, 변호사 217명, 1941년 판사 242명, 검사 130명, 변호사 208명이다.¹⁹⁾ <조선총독부관보>에 나타난 바로는 일제시기의 조선인 판검사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는 모두 484명이다.²⁰⁾

일제강점 직전 법관양성소를 개편하여 1909년 10월 법학교 관제를 공포하였다. 법학교는 3년반 운영하다 1911년 11월 폐지되었고 1회 29명이 졸업하였다. 일제는 같은해 10월 (前)경성전수학교 관제를 공포하여 5년간 운영하면서 5회에 걸쳐 143명을 졸업시켰다. 이후 전문학교 관제 공포에 따라 경성전수학교(1916~22)는 같은 교명 아래 6년간 운영하면서 6회에 걸쳐 217명을 졸업시켰다. 1922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1922~45)로 1926년까지 25회에 걸쳐 1347명을 졸업시켰다.

1.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

장기상(1886~?)은 1912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1914년 안동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17년부터 상주지청, 마산지청, 해주지법 판사를 재직하고, 1927년 대구복심법원 판사가 되었다. 1930년 대구복심법원 판사로 퇴직,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8년부터 대구고법원장에 재직하다 1951년 퇴임하였다.

채용묵(1889~?)은 1914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1918년 경성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1920년 변호사 개업, 1928년 함흥변호사회 회장,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 되었다. 해방후 1948년 서울서 변호사, 1949년 민주국민당 북한당부 최고위원을 지냈다.

18)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http:// e-gonghun.mpva.go.kr](http://e-gonghun.mpva.go.kr)) 및 <친일인명사전>, 2009, 33쪽.

19) <친일인명사전>, 2009, 34쪽. 1941년 판검사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합산 통계만 있다.

20) <친일인명사전>, 34쪽. 이 중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이는 185명이다.

민병성(1890~?)은 1914년에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에 조선총독부 검사로 특임되었다. 1930년 경성지방법원 검사, 1936년 대구지방법원 검사, 1944년에 다시 경성지방법원 검사로 해방까지 근무하였다.

이우익(1890~1982)은 1912년 경성법학교를 졸업, 이듬해 판사전형시에 합격, 1920년 대구지법 판사, 1921년 대구복심법원 판사, 1926년 대구복심법원장, 1927년 대구서 변호사, 해방후 대구고검장, 1950년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임, 다시 변호사, 병산서원 및 도산서원장,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남정숙(1891~?)은 1912년에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공주지방법원 서기 겸 통역인으로 근무하다 1918년 공주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1923년에 공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다 1926~42년 조선산업주식회사 감사를 지냈다. 해방후 청주지방법원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이정준(1890~1940)은 1915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있다가 1920년 공주지법 판사에 임명되었다. 1938년 해주지법 판사로 있다 퇴직하고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이흥중(1891~?)은 1912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있다가 1914년 개성지청 판사가 되었다. 1922년 평양복심법원 판사가 되었다가 이듬해 퇴직, 공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31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 상의원을 맡았고, 단군신전봉찬회 이사도 맡았다. 1937년 경성제일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939년 조선변호사협회 이사, 조선유도(儒道)연합회 평의원도 되었다. 1945~47년 경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내고, 1947년 조선인권옹호연맹 위원장이 되었다. 같은 해 미소공동위 협의참가단 대표로 활동하다 1950년 납북되었다.

계명수(1892~?)는 1915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서기 겸 통역인으로 근무하다 1922년 해주지법 판사, 1924년 평양지법 판사, 1926년 광주지법 판사를 지내다 1933년 퇴직했다. 1934년 신의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김동현(1892~?)은 경성전수학교 졸업후 1920년 광주지법 판사, 부산지법, 대구지법 판사를 지내다 변호사개업, 해방후 대구고법원장, 대법관을 지내고 대법원장에 추천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고 1959년

퇴직하였다.

김정배(1889~1927)는 1914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근무하다 대전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검사로 전직하여 1918년부터 광주지법 검사를 지냈다. 1922년 진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유영(1892~1950)은 1917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있다가 1920년 경주지청 판사에 임명되었다. 1927년 평양복심법원 판사, 1932년 목포지청 판사로 근무하였다. 그후 북청지청, 진주지청으로 옮겨 판사로 근무하였다. 해방후 1946년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되었다가 1948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이정혁(1893)은 1913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서기로 있다가 1923년 공주지법 판사가 되었다. 1927년 대구지법 판사로 있다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해방후 1945년 경성소년심판소 수석판사로 재직하다 1948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 서울변호사회 회장도 맡았다. 6.25때 납북되었다.

함성욱(1893~?)은 경성전수학교 졸업 후 서기로 있다가 1932년 광주지법 순천지청 판사가 되고, 1936년 정읍지원 판사, 1943년부터 밀양지원 판사로 재직했다. 1948년 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장두식(1893~?)은 1915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있다가 1920년 상주지청 판사가 되었다. 1922년 전주에서 변호사 개업, 1939년 견책을 받았다. 해방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6.25때 납북되었다.

허진(1894~1968)은 1919년 경성전수학교 졸업, 이듬해 판검사고시합격, 대구지법 판사를 지내고 1925년 변호사로 활동, 1948년 대구지법원장, 1951년 부산지법원장, 1952년 서울고법원장, 1954~59년 대법관을 지냈다.

문기선(1896~1969)은 1921년 경성법전 졸업, 1923년 조선변시 합격, 1927년 청진에서 변호사, 1940년 만주에서 율사 활동, 1943년 서울에서 변호사, 1946년 대구소년심리원장, 1952년 청주지법원장, 1957년 전주지법원장, 1960년 혁명특별재판소장을 지냈다.

오태경(1896~?)은 1919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있다 1923년 원산지청 판사가 되었다. 1927년부터 대구지법 판사, 1930년 경주지청 판사, 1934년 진주지청 판사로 있다 1938년 퇴임하고 1938년 진주에

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해방후 1946년 부산지법 밀양지청 판사에 임명되었다.

김세완(1894~1973)은 1919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있다 1925년 판검사특별고시에 합격했다. 1926년에 판사로 임명되고, 1932년부터 경성지법 판사가 되었다. 1938년 인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해방후 인천군청 적산관리국장을 지내다 1952년 제주지방법원장, 1953년 헌법위원, 1959년 대법관, 1961년 심계원장을 지냈다.

나재승(1895~?)은 1916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 서기로 근무하다 1925년 조선인사법관고시에 합격하여 1928년 평양지방법원 검사, 1930년 수뢰협의로 면직되어 1936년 대성제과주식회사 감사역이 되고 광산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1947년에 변호사 개업, 주간 법정신문사 사장이 되었다.

조인환(1895~?)은 1917년 경성전수학교 졸업, 서기로 근무하다 1925년 광주지법 검사로 임명, 1929년 신의주지법 검사, 1935년 평양지법 검사, 1936년 수뢰죄로 퇴직, 해방후 서울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선득(1896~?)은 1918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법원서기로 있다가 1921년 판사로 임명되어 군산지청, 신의주지청에 재직하였다. 1925년 군산에서 변호사 개업, 1939년 강원도 통천상공업회장 등을 맡았다. 해방후 진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였다.

김용찬(1896~?)은 1919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서기로 근무하다 1924년 검사로 임명되었다. 1930년 부산지법 검사, 1936년 대구지법 검사, 1943년 평양지법 검사를 지내고 1943년부터 경성지법 검사로 있었다. 해방후 1946년 미군정청 검사장, 1947년 서울지방검찰청장을 역임, 1948년부터 변호사로 있다 납북되었다.

차균경(1897~?)은 1920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1929년 북청지청 판사, 1932년 춘청지청 판사, 1934년 군산지청 판사로 퇴임, 1939년 군산에서 변호사, 1945년 군산지원장을 지냈다.

탁창하(1896~1938)는 1918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1920년 해주지법 검사로 임명, 1923년 신의주지청 검사로 퇴직하고, 메이지대학 고등전공과

를 수료했다. 1924년 신의주에서 변호사, 1927년 조선공산당사건 변론, 1938년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지부장을 맡았다.

조용순(1898~1975)은 1922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1925년 관검사특별 임용시험에 합격, 1926년 재령지청 판사, 1932년 평양지법 판사, 1936년부터 순천지청 판사, 1941년 해주에서 변호사 개업, 해방후 1945년 대전지 법원장, 1952년 대구고법원장, 1953~54년 대법관, 1954~55년 법무부장관, 1958~60년 대법원장을 지냈다.

김종석(1899~?)은 1922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법원 서기로 있다가 1926년 판사로 상주지청에서 근무했다. 1930년부터 인천지청 판사, 수원 지청 판사, 1944년 안동지청 판사로 근무하였다. 1948년 서울에서 변호사 로 활동했다.

임석규(1899~?)은 1921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근무하 다 1926년 마산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32년 정읍지청 판사, 1939년 함흥지법 판사가 되었다. 1942년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해방후 195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1959년 광주지법 원장을 역임하고 1961년 서 울서 변호사 활동을 하였다.

정구영(1899~1978)은 1919년 경성법전을 졸업, 1920년 관검사특별임용 시험에 합격, 1923년 고성지검 검사로 시작했으나 1924년 변호사로 개업, 1830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장, 1943년 경성변호사회장을 지냈다. 해방후 1946년 조선법조회 이사장, 1956년 초대 한국법학원장, 1959년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1963년 민주공화당 초대 총재로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3 선 개헌과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1974년 민주공화당을 탈당하였다.²¹⁾

진태구(1899~?)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1930년 평양지법 판사가 되었 다. 1937년부터 경주지청, 밀양지청, 순천지청 판사로 있었다. 1946년 경 성공소원 판사로 있다가 1948년 변호사 개업, 1950년 납북되었다.

김정배(1889~1927)는 1914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법원서기로 근무하 다 대전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검사로 전직하여 1918년부터 광주지법 검사를 지냈다. 1922년 진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21) 자세한 이영석, <정구영회고록>, 중앙일보사, 1987;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294~312쪽.

홍인석(1897~?)은 1919년 경성전수학교 졸업, 1925년 판사에 특별임용, 1930년 광주지법 판사가 되었다. 1936년 평양지법 판사, 1938년 상주지청 판사, 1942년 평양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오완수(1898~1985)는 1917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서기로 있다가 1920년 안동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24년부터 통영지청, 대구복심법원, 경성복심법원 판사, 1935년 대구복심법원 판사로 전임되었다. 1942년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5년 미군정청에 의해 대구지검장에 임명되었다. 1955~60년 대구변호사회 회장, 1960~61년 대한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송화식(1898~1961)은 1918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서기로 있다가 192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명되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정치에도 관여하였다. 1942년 전남신보사 취체역이 되었고,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가 되었다. 해방후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48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임명되었다. 195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1954~56년 광주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한격만(1898~1985)은 1924년 경성법전을 졸업, 1926년 고문합격, 1927년 함흥지법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1929년 변호사 개업, 1932년 함흥변호사회 회장을 지내며 해방을 맞았다. 1946년 경성공소원 판사, 1948년 서울지방법원장, 1952년 대법관, 같은 해 검찰총장, 1955년 변호사 개업, 1960년 대한변협회장, 1973년 법률신문사장을 지냈다.

백한성(1899~1971)은 1923년 경성법전을 졸업, 서기로 근무하다 1930년 사법관후보고시합격, 1933년부터 평양지법, 청진지법, 순천지청 판사, 강경지청 판사로 해방을 맞았다. 1945년 대전지검 검사장, 1948년 법무부 차관, 1949년 법전편찬위원 및 서울고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으로 1963년까지 재직. 1953~55년 내무부장관, 1954년 국무총리 임시서리, 1955~61년 대법관, 1961년 변호사가 되었다.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다.²²⁾

김일용(1900~?)은 1922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일하다 조선인사법관시험에 합격, 1926년 경성지법 춘천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22) 자세한 내용은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313~326쪽.

1928년 부산지법 판사를 지내다 변호사 개업, 1933년 총독부 검사에 재임용되어 1938년까지 경성지법 검사를 지냈다. 해방후 1948년까지 춘천지법 원장을 지내고 1950년부터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원중억(1900~?)은 1921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 법원서기로 근무하다 1925년 강경지청 판사에 임명되었다. 1927년부터 인천지청, 해주지법, 해주복심법원 판사로 있다 1939년 퇴직했다. 1940년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해방후에도 계속했다.

최정묵(1900~50)은 1921년 경성전수학교 졸업, 평양지법 검사로 있다 1928년 변호사 개업, 1938년 일본 변호사회 명예이사, 1939년 평양변호사회 회장, 1945년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1946년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민영수(1901~68)는 1924년 경성법전을 졸업, 다시 도호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27년부터 부산지방법원 검사대리, 군산지청 판사, 함흥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1935년부터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해방후 1961년 검찰위원장을 지냈다.

양윤식(1902~77)은 1924년 경성법전 졸업, 1927년 조선변시 합격, 그해 변호사 개업, 1934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 부회장, 1939년 경성부회 의원, 1925년 경성공소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나 이내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 1970년 서울변호사회장, 1971년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윤철균(1902~?)은 1926년 경성법전을 졸업, 서기로 근무하다 1931년 청주지청 판사, 1935년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해방후 1945년 밀양지원 판사, 1948년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되었다. 1954년부터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1957년 퇴직하였다.

조진만(1903~79)은 1923년 경성법전을 졸업, 1924년 부산지법 서기로 있다가 1925년 고문에 합격했다. 1926년 경성지법 검사대리를 거쳐 1927년 판사로 임명되었다. 1929년부터 평양지법, 평양복심원, 대구복심원 판사, 1939년 한국인 최초로 부장판사가 되었다²³⁾. 1943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 1948년 법전편찬위원, 1951~52년 법무부장관, 1960년 서울변호사회

23) 일제시기 한국인으로 부장판사가 된 사람은 조진만 외에 평양지법의 김준평 부장판사가 있었다.

장, 1961~68년 대법원장, 1968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였다.²⁴⁾

민경준(1903~36)은 1923년 경성법전을 졸업, 서기로 근무하다 1927년 판사에 임명되었다. 1929년부터 통영지청, 부산지법 판사, 1935년부터 대구지법 경주지청 판사로 근무하다 사망하였다.

한세복(1903~78)은 1922년 경성법전 졸업, 1928년 조선변시에 합격, 1930년 함흥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후 평생 변호사로 활동하였다.²⁵⁾

방준경(1905~70)은 1924년 경성법전을 졸업, 1925~33년 경성지법 서기 겸 통역인으로 있으면서 1926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에 가입해 김화산이란 필명으로 글을 발표하다 제명되었다. 1930년 사법관후보 고시에 합격, 1933년부터 공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인천지청 판사를 지내다 해방을 맞았다. 1947년 서울서 변호사 개업, 1959년 대법원 판사, 1964~66년 대법관을 지냈다.²⁶⁾

이병용(1905~92)은 1929년 경성법전을 졸업, 1932년에 큐슈제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34년 고문에 합격, 1935년 대구지법 검사대리로 출발하였다. 1937년 군산지청 검사, 1939년 장흥지청 검사가 되었다. 1940년 신의주지법으로 전임, 1943년부터 평양북심법원 검사로 있다 해방을 맞았다. 1945년 미군정청에 의해 경성공소원 검사에 임명되고, 1947년 서울고검 검사로 바뀌었다. 1948년 법전편찬위원으로 활동, 같은 해 대전지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었다 1950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홍규(1905~2002)는 1929년 경성법전을 졸업, 검찰청 서기로 근무, 1949년부터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장, 법무부 교정국장을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이회창 전 총리의 부친이다²⁷⁾.

형덕기(1905~?)는 1924년 경성법전을 졸업, 서기로 있다가 1930년 상주지청 판사에 임명되어, 1934년부터 경주지청, 신의주지법, 사리원지청 판사를 지내고, 1943년 신의주에서 변호사 개업, 해방후에도 서울에서 변호

24)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327~334쪽.

25) 자세히는 김이조, 앞의 책, 299~310쪽.

26) 김화산(金華山)이란 시인, 소설가, 평론가로서의 필명 때문에 위키백과사전에 올라있다. 일제시기 한국법률가가 문학,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투쟁’하고 그러면서도 ‘친일’로 간주되는 생애와 사상을 보여주는 흥미있는 인물이다.

27) 이회창, <아름다운 원칙>, 김영사, 1997 참조.

사로 활동했다.

최종석(1908~?)은 1928년 경성법전을 졸업, 1935~36년 니혼대학에서 연구하다 1937년 고문에 합격, 1940년 대구지법 검사에 임명되었다. 1942년 진주지법 검사로 퇴직, 1943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 해방후 경성공소원 검사로 임명, 1946년 사법부 행정국장을 지냈다.

김치결(1909~2004)은 1932년 경성법전을 졸업, 1939년 조선변시합격, 1942년 고문 합격, 1946년 서울지법 판사, 1950년 서울고법 판사, 1961년 대구고법원장, 1964~73년 대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사광욱(1909~83)은 1933년 경성법전을 졸업, 1940년 고문 합격, 1943년 경성지법 판사, 1959년 대법관, 1961~73년 대법원판사, 초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을 지냈다.

유진령(1909~98)은 1930년 경성법전을 졸업, 법원서기로 근무하다 1938년 부산지법 판사에 임명되었다. 1943년부터 해방까지 함흥지법 판사로 있었다. 해방후 대전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1951년 대구고법 판사, 1952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1955년부터 대전에서 변호사로 있다 1960년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5.16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방순원(1914~2004)은 1935년 경성법전을 졸업, 1940년 고문 합격, 1943년 목포지원 판사, 1945년 동법원장이 되었다. 해방후 1949년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으나 이내 변호사 개업, 대학에서 민사소송법 강의, 1958년 서울법대 조교수가 되었다. 1961년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1974년 변호사 개업,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²⁸⁾

심동구(1918~?)는 1938년 경성법전을 졸업, 1941년 큐슈제대를 중퇴했다. 1941년 고문합격, 1944년 대구지법 판사가 되어 해방까지 재직했다. 1946년 경성지법 판사, 부장판사, 법전편찬위원을 맡다가 1950년 납북되었다.

2. 보성전문학교 출신

엄식(1884~1924)은 1907년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1909년 사법

28) 자세한 최중고, <한국의 법률가>, 2007, 513~518쪽.

관시험에 합격하여 통감부 의성구재판소 판사에 임명되었다. 합방후 유임되었다가 1912년 평양지법 영변구재판소 판사로 전임되었다. 1922년 신의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허헌(1885~1950)은 1907년 보전을 졸업, 메이지대학 법학부에 편입, 1908년 조선변시에 합격, 변호사 등록했으나 법정에서 판사를 옥했다가 징계 당했다. 3.1운동 33인의 변호를 맡았고, 1921년 북경의 국제변호사대회에 참석, 1925년 조선변호사회장, 1925~27년 세계일주여행, 1929년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변호사자격 박탈, 1932년 석방, 1943년 재수감, 1945년 병보석으로 출감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해방정국에서 활동하였다. 월북하여 김일성대학 총장으로 개교식에 참석하러 출근하다 대동강 홍수에 익사하였다.²⁹⁾

정준모(1887~1940)는 1908년 보전을 졸업, 이듬해 사법관시험에 합격, 재령구재판소 판사가 되었다. 1911년 공주구재판소, 1913년 밀양지청 판사로 있다가 그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정구창(1891~1921)은 보전을 졸업하고 해주지방재판소에서 서기로 있다가 1908년 조선변시에 합격, 경성재판소 판사가 되었다가 1913년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호정(1895~?)은 1916년 보전 법과를 졸업하고 1920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했다. 법원서기로 출발하여 1925년부터 상주지청, 부산지법 판사로 있다 1930년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1945년 한민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대구공소원장에 임명되었다.

3. 경성제국대학 출신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에 법문학부가 설립되어 1945년까지 18회에 걸쳐 714명을 졸업시켰다.

임문석(1903~71)은 1930년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 평북 내무부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하였다. 1932년 고문 행정과와 사법과에 합격하여 1934년

29) 자세한 허근욱, <민족변호사 허헌>, 지혜네, 2001;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126~153쪽.

부터 운산군수 등 관직에 있다 1943년부터 전남도청 재무부장으로 해방을 맞았다. 1946년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 1949년 대구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58년 국회의원이 되어 재선되었고, 1961년 5.16으로 의정활동이 정지되었다.

최병주(1903~?)는 1930년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 1932년 고문에 합격, 1936년 평양지법 판사, 1939년 변호사 개업, 1945년 청주지법 판사, 1946년 변호사, 1948년 법전편찬위원, 1948~1950년 대법관, 1950년 민의원 당선, 6.25때 납북되었다.

정창운(1906~68)은 1931년 경성제대 법과를 졸업, 1939년 고문합격, 1942년 경성지법 검사가 되었다. 1943년 광주지법 검사로 옮겨 해방까지 재직. 1945년 순천지청 검사, 1948년 대검찰청 검사, 1949년 법전편찬위원, 1958년 서울고검장을 역임, 1960년 변호사 개업, 1961년 동국대 교수, 1963년 검찰총장, 1965년 동국대 법정대학장을 지냈다.

현석호(1907~88)는 1934년 경성제대 졸업, 재학중 고문 행정과 합격, 1935년 전남 내무부에 근무, 1936년 화순군수, 1936년 황해도 산업과장, 1942년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 서기관, 1944년 충남도청에서 해방까지 재직했다. 미군정의 협력요청에 ‘친일파’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 사양하고, 경성전기주식회사 전무로 머물렀다. 1954년 국회의원에 당선했으나 사사오입개헌을 보고 자유당에서 탈당했다. 1960년 예천에서 국회의원 당선, 1960년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다시 국방부장관을 지내다 5.16으로 반국가행위 혐의로 체포되어 불기소되었다. 1967~85년 카톨릭교리연구소 소장, 1985~88년 한국카톨릭문화연구원 이사장을 지냈다.³⁰⁾

장후영(1909~85)은 1932년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 재학중 고문 합격, 일본에 가서 교토제대 법학부 대학원에 입학했다 중퇴하고 경성제대 법학부 대학원을 1934년에 수료했다. 그해 경성지법 검사국 사법관시보에 임용되어 1936년 광주지법 판사가 되었다. 1939년 판사직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가 1941년까지 도쿄제대 대학원에서 연구하면서 도쿄변호사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42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5년 조선

30) 현석호, <한 삶의 고백>, 탐구당, 1986 참조.

법전편찬부장과 국립법제도서관 초대 관장을 맡았다. 1946년 법정사(法政社) 사장, 1948년 법전편찬위원, 1951~53년 서울변호사회 회장, 1953~60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평재(1909~68)는 1933년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 1937년 고문합격, 1940년 평양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1943년 서울서 변호사 개업. 해방후 1946년 법학자동맹 위원장, 민주주의민족전선 임시헌법기초위원을 맡았다.³¹⁾ 1947년 조선인권옹호연맹 사무총장, 1962~64년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 국제법률가협회 회장, 한국법학원 이사를 지냈다.

전봉덕(1910~98)은 1932년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34년까지 만주 봉천보통학교 교원으로 있다 1940년 경성제대 법과를 졸업하였다. 1939년 고문 사법과와 행정과를 합격, 1940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에 근무하다 1941년 경시에 임용되어 평북 경찰부 보안과장을 지냈다. 1943년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장이 되어 해방까지 재직했다. 해방후에도 미군정하에 유임되어 1946년 경무부 공안과장을 거쳐 1947년 경찰전문학교 부교장, 경무부 교육국 부국장을 겸임했다. 1948년 육군에 지원 육사 1기로 졸업하여 육군 소령으로 임관했다. 1949년 육군 소령으로 헌병 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국회프락치사건, 김구암살사건의 수사에 참여하였다. 1950년 예편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내고, 1951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69~70년 대한변협 회장, 1973년 한국법사학회 회장, 1978년 한국법학원 원장을 지냈다. 198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하여 1998년 5월 18일 사망하였다.³²⁾

이천상(1911~?)은 1936년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문에 합격, 1939년에 평양지법 판사로 임명되었다. 1941년부터 광주지법 판사로 있었다. 1946년 서울지법 판사, 1948년 법전편찬위원과 법제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1958년 변호사 개업, 1960년 한일회담 대표를 맡았다.

31) 법학자동맹은 1946년 1월 조 변호사가 창립하여 위원장을 맡아 경성제대 출신들이 많이 가입하였고 조변호사 사무실에 본부를 두었다. 그러나 활동이 미미하고 김갑수 당시 법무부 차관이 신원보증을 하여 조변호사 등 전원에 대해 남로당 탈당성명을 신문에 실고 해산과 동시에 전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였다(선우중원).

32)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357~368쪽. 전봉덕, <한국법제사>(1968), <한국근대 법사상사>(1980) 등 저서도 출간하였다.

계창업(1916~99)은 1940년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 재학중 고문 합격, 1940년 평양지법 사법관시보로 시작, 1942년 해주지법 판사로 승진해 해방까지 근무하였다. 1946년 사법요원양성소 교수, 1947년 변호사 개업, 1959년 대법원 판사, 1960년 대법관 직무대리를 하였다. 1961년 변호사 개업하고 한국방송윤리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계철순(1912~2003)은 1935년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 1941년 경성지법 검사국 사법관시보로 시작, 1941년 경성지법 검사대리, 1943년 대구지법 판사에 임명되어 해방까지 근무하였다. 해방후 대구공소원 판사로 있다가 1955년 경북대 법정대학장, 1961년 혁명재판소 심판관을 지냈다. 1967년 경북대 총장을 지내고, 1968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³³⁾

김영재(1907~?)는 1932년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 경찰부 경부로 근무하다 1939년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1941년 경성지법 검사국 검사, 1944년 평양지법 검사가 되었다. 1945년 서울서 변호사 개업, 1947년 남로당에 가입, 1948년 1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명되었다. 1948년 법전편찬위원, 1949년 차장검사로 근무중 1949년 7월 남로당 법조프락치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어 사직하였다³⁴⁾. 1950년 2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그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배정현(1909~78)은 1932년 경성제대 졸, 1938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지냈다. 해방후 1954년 대법관, 1964년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정근영(1911~90)은 정구창 변호사의 아들로 1936년 경성제대 철학과 졸업, 1940년 법학과를 졸업, 1941년 조선변시 합격, 1944년 변호사 개업, 1945년 경성지방재판소 판사, 1952년 국민대 전임강사, 1958년 성균관대 교수, 1966년 변호사로 재개업하였다.

김갑수(1912~95)는 1935년 경성제대 졸업, 1937년 평양지법 판사, 1941년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내고, 1945년 서울법대 교수, 1929~50년 법무

33) 계철순, <사주-내가 지낸 이야기>, 중외출판사, 1967 참조.

34) 법조프락치사건은 1949년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와 오건일 판사, 김석광 변호사 등 30여 명의 현직 판검사가 포함된 사건이었다. 1949년 12월 선우종원 검사 옆자리에 근무하던 김진홍 검사가 수사관련 서류를 유출시킨 것이 단서가 되어 선우검사가 연루자 전원을 구속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냈으나 6.25 후에 월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선우종원)

부 차관, 1950년 내무부차관, 1953~60년 대법관, 1960년 대법원장 직무대리, 1960~61년 국회의원을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임한경(1913~80)은 1936년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 1938년 고문합격, 1941년 대구지법 판사가 되었다. 1943년부터 함흥지법 판사로 해방을 맞았다. 1946년 서울지법 판사, 1954년 서울지법원장, 1959년 서울고법원장을 지내고, 1961년 서울서 변호사를 개업, 1975년 대한변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고재호(1913~91)는 1937년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 고문에 합격, 1942년 대구지법 판사, 1945년 동법원 부장판사, 1952년 동법원장, 1954년 대법관, 1960년 헌법위원, 1961년 변호사, 1965년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³⁵⁾

양정수(1912~2004)는 1936년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 1940년에 고문에 합격, 1941년 대구지법 검사대리로 출발하여 1943년부터 대전지법 검사로 재직하다 해방을 맞았다. 1948년 서울고검 검사, 1950년 육군본부 법무감, 1955년 공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1956년 국방부 차관보, 1960년 대검찰청 검사를 지내고 1960년 변호사를 개업하여 1977~78년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민복기(1913~2007)는 1937년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1938년에 경성지방법원 검사대리로 임용되었다. 1940년 동법원 판사가 되었고, 1945년 경성복심법원 판사가 되어 해방까지 근무하였다. 해방후 1946년 미군정청 사법부 법률기초국장을 거쳐 대검찰청 검사를 지내다 1955년 검찰총장, 1961년 대법원 판사, 1966년 법무부장관, 1978년 대법원장, 1979년 변호사가 되었다.

이항녕(1915~2008)은 1940년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 재학중 고문 행정과에 합격, 1940년 총독부 학무국에서 근무하다 1941년 경남 하동군수로 부임했다. 1942년 7월 창녕군수로 전임하여 해방까지 재직했다. 해방후 1945년 민군정청에 의해 창녕군수를 유임받고 그해 10월 경남 내무부 사회과장으로 발령받았으나 사임하였다. 부산의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출

35) 고재호, <법조반백년>, 박영사, 1986;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450~456쪽.

발, 1946년 양산중학교장, 1948년 양산농업학교장을 지냈다. 1949~50년 동아대학교 교수, 1954~71년 고려대학교 교수, 1960년 문교부 차관, 1972~80년 홍익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법철학자로 알려져 있다.³⁶⁾

홍진기(1917~86)는 1940년 경성제대 법과를 졸업하고 조수로 근무 중 그해 고문에 합격, 1942년 전주지법 예비판사로 근무 후 1944년 전주지법 판사로 해방까지 재직했다. 1945년 미군정청 법제부 법제관을 거쳐 사법요원양성소 교수, 1948년 법무부 조사국장, 1950년 법무부 조사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 1951년 한일회담 대표, 1954년 법무부 차관, 1955년 해무청장, 1958년 법무부장관, 1960년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3.15부정선거사건으로 체포되어 1961년 혁명재판소 상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963년 광복절에 특사되었다. 1966년 중앙일보 회장, 1980년 동양방송 회장도 지냈다³⁷⁾.

주재황(1918~2010)은 경성제대를 졸업, 1942년 고문합격, 1946년 서울법대 조교수, 1950~56년 서울지검, 서울고검 검사, 1959년 서울지법원장, 1982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그 외에도 황산덕, 박일경, 이영섭, 신현확, 조경희, 김증한, 고광림, 김기범, 서일교, 서임수, 김기선, 서돈각 같은 법조계, 관계, 법학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있다.

4. 일본유학 출신

김병로(1887~1964)는 1913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 재학중 고문합격, 쥬오대학 고등연구과에서 연구하였다. 1915년 귀국하여 경성전수학교 교수가 되고 <사법협회잡지> 편집인이었다. 1919년 밀양지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23년 허헌, 김태영, 이승우, 김용무 등과 형사공동연구회를 조직, 한국인의 무료변론을 맡았다. 1927

36) 저서로 <법철학개론>, <법철학적 인간학>, <작은 언덕에 서서>, <낙엽의 자화상>, <청산에 살리라> 등이 있다.

37) 자세히는 <유민 홍진기 전기>, 중앙일보사, 1993 참조.

년부터 신간회의 일을 맡았고, 1930년대에는 ‘수절’의 세월을 보냈다. 해방후 정국에 관여하다 미군정청 사법부장에 임명되었다. 1947년 법전기초위원장, 1948년 초대 법원장에 취임하여 1957년까지 재임하였다. 퇴임후 야당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되었다.³⁸⁾

이찬형(효봉, 1888~1966)은 1914년 와세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경성지법, 함흥지법 판사를 거쳐 평양복심법원 판사가 되었다. 1923년 한 독립운동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출가하여 불가에 귀의하여 전국을 방랑하였다. 1926년에 계를 받고 스님이 되어 ‘판사중’으로 후일 조계종정까지 되었다.³⁹⁾

김용무(1891~?)는 유오대학을 졸업, 고문에 합격, 1935~37년 보성전문교장을 지냈다. 해방후 미군정 대법원장, 1949년 반민특위 재판관,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낙북되었다.

한상범(1893~?)은 1919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 1926년 평양지법 판사, 1929년 평양복심법원 판사로 있다 1930년 퇴직, 평양에서 변호사 개업, 1947년 대전에서 변호사 중 1950년 대법관 재직중 6.25때 낙북되었다.

한근조(1895~1972)는 1921년 메이지대학 법과 졸, 1922년 조선변시 합격, 평양서 변호사 개업, 1936년 평양변호사회장, 1945년 평양시장, 한민당 문화부장, 1946년 미군정청 대법관, 사법부 차장, 1948년 헌법기초위원, 1958년 국회의원을 지냈다.⁴⁰⁾

이 인(1896~1979)은 메이지대학 법과 졸업, 1923년 조선변시 합격, 변호사로 항일투쟁사건 변호하다 정직처분을 받았다. 조선어학회사건으로 3년간 복역, 1927년 조선변호사회장을 지냈다. 해방후 대법관, 대법원장 직무대리, 검찰총장, 법무장관, 민의원, 참의원을 지내고, 야당통합에 노력하였다.⁴¹⁾

김두일(1898~?)은 1924년 니혼대학 법률과를 졸업, 법원서기로 있다 1932

38) 자세히는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민음사, 2001; 최종고, <가인 김병로>, 문화체육부, 1995;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156~203쪽.

39) 자세히는 법정,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효봉선사의 자취)>, 1960; 김용덕, <효봉선사>, 동아일보사, 1992;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226~247쪽.

40) 헌법학자 한동섭의 부친으로, 자세히는 김이조, 앞의 책, 287~298쪽.

41) 이인, <애산여적>, 1961과 <반세기의 증언>, 1974,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2007, 261~292쪽.

년 판사에 임명되어 청진지법, 1939년 해주지법에서 근무하였다. 1943년 평양에서 변호사 개업, 해방후 인천지청장, 1949년 춘천지청장을 지내고, 1950~60년 대법관을 지내다 4.19후 해임되었다. 1960년 9월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김우열(1900~49)은 1929년 니혼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31년에 고문을 합격, 1932년 평양지법 검사대리로 시작, 1935년 해주지법 판사가 되었다. 1939년 광주지법으로 옮겨 해방까지 판사로 있었다. 1946년 경성공소원 판사, 1948년 서울고법원장 겸 법전편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노진설(1900~68)은 1928년 메이지대학 졸업, 조선변시 합격 후 평양서 변호사. 중일전쟁후 6개월 투옥, 1937년 변호사 자격박탈 2년후 재인가, 1945년 서울공소원 판사, 1946년 대법관, 1949년 검찰위원장, 1952 심계원장을 지냈다.

최대교(1901~92)는 1929년 호세이대학 법과를 졸업, 1932년 고문에 합격, 1940년 함흥지법 검사, 1942년 광주지법 검사를 지냈다. 해방후 미군 정청에 의해 전주지법 검사장, 1948년 서울지검 검사장, 1949년 법전편찬위원, 그해 변호사 개업, 1960년 서울고검장, 1963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⁴²⁾

민부훈(1902~?)은 1927년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30년부터 경성 법정학교 강사를 하다가 고시에 합격하였다. 193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35년 검사로 전직하여 1936년 평양지방법원 검사가 되었다. 수뢰혐의로 1938년 관직에서 물러나 1944년 진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신태약(1902~80)은 1924년 시대일보 기사를 지내다 와세다대학과 주오 대학 법과를 졸업, 1931년 고문에 합격, 이듬해 변호사 개업, 김병로와 신간회 활동, 1936년 조선일보 이사. 해방후 변호사로 구국문화사를 창립, 월간 <구국>을 발간, 검찰위원장, 대한변협회장을 지냈다.

엄보익(1903~74)은 1923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 1930년 통영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32년부터 부산지법, 청주지청 판사로 근무하다 1942

42) 자세한 정공식, 검사의 한 표상으로서의 최대교, <법사학연구> 34호, 2006.

년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 해방후 대구공소원 판사에 임명되었고, 1948년 대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김준평(1904~?)은 1928년 교토제국대학 법학부 재학중 고문 합격, 경성지법 검사대리로 시작, 192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명되었다. 1931년 대구복심법원 판사, 1941년 평양지법 부장판사가 되었다. 1943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 1945년 경성공소원 판사, 1948년 법전편찬위원으로 활동하다 1950년 납북되었다.

임석무(1904~89)는 1934년 니혼대학 법과 졸업, 1939년 고문 합격, 1940년 함흥지법 판사, 1943년 평양서 변호사 개업, 해방후 1948년 인천지법 판사, 1949년 대검찰청 검사, 1951년 대전지청 검사장, 1955년 대구지청 검사장, 1956년 법무부차관, 1957년 서울서 변호사, 1961년 제일변호사회장을 지냈다.

임적란(1904~89)은 보통학교 훈도로 근무하다 유학하여 1934년 니혼대학 법과를 졸업, 1942년 함흥지법 판사가 되었다. 1943년 평양서 변호사를 개업, 해방후 1948년 인천지청 부장판사, 1949년 대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1955년 법무부 차관, 1956년 서울서 변호사 개업, 1961년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되었다.

민병창(1905~41)은 1931년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34년 주코법률학교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1934년부터 변호사 사무실과 <법률평론>사에서 근무했다. 1939년부터 함흥지방법원 검사대리로 시작하여 1940년에는 함흥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박찬일(1906~89)은 1931년 와세다대학을 졸업, 같은 해 조선변시 합격, 1932년 목포에서 변호사 개업, 중국 상해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후 광주 조선대학교 교수, 저서도 남겼다.⁴³⁾

변옥주(1906~62)는 교토제대 법과를 졸업, 일제시기에는 천진지법, 부산지법 통영지청 판사를 지내고, 해방후 전주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1956~60년 대법관을 지냈다.

진형하(1907~85)는 교사로 있다가 1938년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 1939

43) 자세한 것은 김이조, 앞의 책, 87~99쪽.

년 고문에 합격. 1942년 대전지법 판사. 해방후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 1946년 대전에서 변호사, 1952년 대전변호사회장, 1960년 민주당 국회의원, 1968년부터 서울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엄상섭(1908~60)은 초등교원으로 있다 일본에 유학, 1939년 고문에 합격, 검사로 활동하였다. 미군정 검사,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사, 부산지검장을 지냈다. 1949년 변호사 개업, 대학에서 가르치다 1950년 민의원 당선,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다.⁴⁴⁾

이충영(1908~?)은 1932년 도쿄제대 법학과를 졸업, 이듬해 고문에 합격, 1934년부터 대구지법 사법관시보로 시작, 1936년 함흥지법 판사에 임명되었다. 1939년 광주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평양북심법원 판사로 옮겼다가 1941년 퇴직하고 실업계에 투신하다 1943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해방후에도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6.25때 납북되었다.⁴⁵⁾

고병국(1909~76)은 1934년 도쿄제대 법과 졸업, 재학중 고문 합격, 1936년 동대학원 수료, 1937년 서울서 변호사 개업, 1938~41년 연희전문 교수, 해방후 1945년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장, 1946년 서울대 법대 초대 학장, 1958년 단국대학장, 1960년 경희대학교 총장, 1967년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을 지냈다.⁴⁶⁾

손동욱(1909~76)은 1929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하고 주오대학 법과에 입학해 1935년 졸업했다. 1937년에 고문합격, 194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명되었다. 1945년 안동지청 판사로 해방을 맞았다. 1945년 대구공소원 판사로 임명되고, 1959년 대법원 판사가 되어 1961년까지 재임하였다. 1961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가 1964~73년 대법관으로 재직하였다.

김장섭(1910~93)은 1935년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 1943년 대구지법 검사대리, 1943년 신의주지법 판사가 되었다. 같은해 검사로 전직하여 광주지법 검사로 근무하다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에도 검사로 활동하다

44) 자세한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336~356쪽; 신동운·허일태 편, <효당 엄상섭 형 법논집>, 서울대출판부, 2005.

45) 이수성 전총리의 부친으로, 선우종원, 이충영, 그 사상과 삶, 이수성, <신뢰와 희망>, 나남, 1997, 315~321쪽. 여기서 선우종원은 납북된 우익 법조인으로 이충영, 이상기, 김용찬, 김태영, 구자관을 법조계의 큰 손실로 꼽고 있다.

46) 자세한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 2007, 234~255쪽.

1949년 변호사 개업, 1953년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방청 검사장, 1959년 농림부차관. 1963년 민주공화당 창당위원이 되었다. 1963년 국회의원, 196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971년 변호사, 1977년 불교중앙문화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김장호(1911~87)는 1939년 주오대학 법학부를 졸업, 1941년 평양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해방을 맞았다. 해방후 부산지법 부장 판사를 역임하고 1948년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 부산변호사회장을 지냈다.

이태희(1911~99)는 1937년 도호쿠제대 법과를 졸업, 1940년에 고문에 합격, 1941년 경성지법 검사국 사법관시보로 출발, 1943년부터 해주지법 검사로 있었다. 해방후 1945년 법무부 검사에 임명되어, 1948년 대검찰청 검사, 1950년 서울지검장, 1951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이어 예일대학 로스쿨에 유학하여 1952~58년 이화여대 법정대학장, 1955년 서울변호사회 부회장, 1957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1958년 국제대학장을 지냈다. 제2공화국 검찰총장으로 부정선거관련 검사장들의 사표를 받는 등 대폭적 개혁을 단행했다. 1961년 5.16이후 반혁명행위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공소취하로 석방되었다. 1962년 달라스의 남감리교대학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연구하고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중 1963~68년 한국법학원 원장을 지냈다.⁴⁷⁾

장경근(1911~78)은 1936년 도쿄제대 법학과를 졸업, 재학중 고문합격, 1938년 경성지법 판사가 되었다. 1941년 경성복심법원 판사가 되어 해방까지 재직하였다. 1945년 경성지법 수석판사, 1948년 서울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나 반민족행위자처벌법에 적용되어 사직하고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9년 내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1950~51년 국방부 차관, 1953년 한일회담 대표, 1954년 민의원 피선, 1957년 내무부 장관, 1958년 민의원 재선, 1960년 3.15부정선거에 관련되어 체포되자 병보석으로 석방,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960~73년 도쿄에서 법률자문을 하며 지내다 1973년 도미, 1974 브라질로 이민, 1977년 귀국하였다.⁴⁸⁾

권혁주(권일, 1911~2001)는 1938년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 재학 중

47) 자세한 최중고, <한국의 법률가>, 서울대출판부, 2007, 425~442쪽.

48) 자세한 최중고, <한국의 법률가>, 2007, 369~388쪽.

고문 합격, 만주국 사법관으로 부임했다. 1939년에 만주국 사법과 고등관 적격고시에 합격했다. 연길지방법원에 판사로 근무하다 1943년 일본으로 돌아왔다. 1944년부터 중앙협화회, 일심회 등의 활동을 하다 해방을 맞았다. 1945년 8월 재일 조선인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다 좌익계열에 의해 친일협력자로 지목되어 제명되었다. 1947년 우익계열의 재일조선인거류민단에서 설립한 사법육성회의 이사가 되었다. 1961~67년 재일본거류민단 단장을 지내고, 1966년 1월 한일회담 대표단 고문이 되었다. 1967년 귀국해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였다. 1971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72년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어 자격상실되었다. 일본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1979년 도쿄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81년 평통자문위원이 되었다.⁴⁹⁾

김달호(1911~79)는 1933년 주오대학 재학중 고문 합격, 1835~40년 청진지법, 광주지법에서 판사, 1943년 만주 봉천에서 변호사 개업, 해방후 1947년 서울지법 검사, 1949년 변호사 개업, 1968년 민의원 당선, 1958년 진보당사건으로 투옥, 1968년 사면으로 출옥되었다.⁵⁰⁾

김선태(1911~78)는 1937년 니혼대학 법학부를 졸업, 1941년부터 전주지법 검사대리를 지냈다. 1942년부터 동법원 판사로 전직, 해방까지 청진지법 판사로 있었다. 해방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 1954년 국회의원에 당선, 1958년 민주당 의원, 1960년 무임소 장관을 지냈다. 정치활동이 금지되다가 신민당, 통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오승근(1911~2002)은 1937년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일본 고문에 합격, 1939년 대구지법 검사대리로 시작하여 1940년 동법원 판사가 되었다. 1944년부터 경성지법 판사로 있었다. 해방후 경성지법 부장판사에 임명되었고, 1946년 서울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1964년부터 제일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오성덕(1911~?)은 1936년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 1939년에 고문 합격,

49) 권일,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일본 속의 남과 북>,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3 및 <권일회고록>, 1987 참조.

50) 자세한 이영근 외, <법에 사는 사람들>, 삼민사, 1984; 김이조, <33인의 법조인상>, 1999, 20~28쪽.

1942년 부산지법 검사에 임명되었다. 1943년부터 해주지법 판사로 있었다. 1945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 1949년 부산지청 차장검사가 되었다. 1951년 법전편찬위원이 되고, 1957년 대검찰청 검사가 되었다. 1959년 대구고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다 1960년 퇴임하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양태원(1912~?)은 1934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 1938년에 조선변시에 합격, 1939년 부산지법 예심판사를 거쳐 1941년 평양지법 판사가 되었다. 1943년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양관수(양원일, 1912~49)는 1936년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고문에 합격, 1939년 함흥지법 사법관시보에서 출발하여 1941년 동법원 판사가 되어 해방까지 재직했다. 1945년 서울지법 판사가 되어 이듬해 부장판사, 194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되어 재직하다 사고로 요절하였다.

양희경(1912~98)은 1941년 주오대학 법과 졸업, 1942년 고문합격, 1945년 변호사 개업, 1949년 서울지법 판사, 1953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1959년 부산지법원장, 1960~61년 대법원 판사, 1973년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

조재천(1912~70)은 교원생활을 하다 일본으로 가 주오대학 법과에 다니다 1940년 조선변호사시험과 일본 고문에 합격하여 중퇴, 1945년부터 평양지법 검사로 있었다. 1945년 미군정청 법무국 검사, 1946년 서울지검 부장검사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을 담당하였다. 1949년 경북경찰국장, 1950년 경북도지사, 1951년 대구서 변호사, 1954년 민의원 당선, 1960년 법무부장관, 1961년 내무부장관, 1962년 서울서 변호사, 1963년 전국구 국회의원, 1967년 민주당 총재를 지냈다.

오건일(1914~?)은 1941년 간사이대학 법학과를 졸업, 1943년부터 평양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1945년 경성지법 판사로 임명되고 1947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8년 사법신문사 사장을 지내다 6.25때 납북되었다.

이원배(1914~95)는 1937년 주오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0년에 고문에 합격, 이어서 부산지법 검사시보로 출발 1943년 동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45년 미군정청에 의해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되었고, 1948년에 변호사를 개업하여 1958년 부산변호사회 회장이 되었다.

한 복(1914~94)은 1938년 도쿄제대 법학과를 졸업, 고문합격 후 1940년 부산지법 판사, 1942년 경성지법 판사가 되었다. 1944년 관계로 진출해 평남도청 산업과장으로 해방까지 재직했다. 1946년 서울에서 변호사, 1964년 법률구조협회장, 1966년 한국수렵협회장을 지냈다.

김홍섭(1915~65)은 1939년 독일하여 니혼대학을 중퇴하고 와세다대학 문과 청강생으로 있다가 조선변시에 합격, 1941년 귀국 김병로와 합동변호사 활동, 해방후 서울지검 건사로 임명되어 조선정판사사건을 담당 후 사표를 내고 농사를 짓던 중 1946년 서울지법 소년부지원장으로 임명, 이어 서울고법 판사, 195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195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1959년 전주지법원장, 1960년 대법원 판사, 1960년 광주고법원장, 1964년 서울고법원장으로 재직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요 문필가였다.⁵¹⁾

한봉세(1915~?)는 1934년 리츠메이칸대학 법과를 졸업, 일본 고문과 만주국 고문에 합격했다. 1943년 전주지법 판사로 재직, 1945년 전주지법 부장판사, 1947년 변호사, 1954년 동아대 교수, 1957년 부산변호사회장, 1969~73년 대법원 판사, 1973년 변호사를 재개했다.

정윤환(1916~?)은 1939년 주오대학 법학과를 졸업, 일본 고문에 합격, 1942년부터 경성지법 판사로 임명되어 해방까지 재직했다. 1945년 경성공소원 판사, 1948년 법전편찬위원,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다 6.25때 납북되었다.

한환진(1916~2008)은 1941년 교토제대를 졸업, 1942년 고문합격, 1945년부터 평양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1960년 대법원 판사, 1973~81년 다시 대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염세열(1917~?)은 1941년 도쿄제대 법학과를 졸업하면서 고문에 합격, 1942년 경성지법 검사대리로 시작, 1944년 함흥지법 판사로 해방까지 재직했다. 1947년부터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6.25중 좌익계열 단체에 가입했다가 처형당했다.

김형근(1915~93)은 1940년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면서 고문에 합격하여 바로 경성지방법원 검사대리로 임명되었다. 1942년부터 동법원 판

51) 자세한 최중고, <사도법관 김홍섭>, 육법사, 1975; 최중고, <한국의 법률가>, 2007, 520~538쪽.

사로 재직하다, 해방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1950년 대통령 비서관, 1955년 내무장관, 1958년 변호사, 1973년 헌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근상(1916~90)은 1941년 니혼대학을 졸업하면서 고문에 합격, 1943년 부산지법 검사로 시작해 신의주지법으로 옮겨 해방까지 근무하였다. 1946년 서울지법 판사, 1848년 법제처 국장, 1949년 법전편찬위원, 1953년 공보처 공보국장, 1955~60년 서울시 공보국장을 역임했다. 1971년 감사원장 직무대리로 퇴임하고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최윤모(1917~94)는 1941년 도쿄제대 법과를 졸업하면서 고문에 합격, 1945년 경성지법 판사로 해방까지 재직했다. 1947년 광주에서 변호사, 1953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1956~59년 청주지법원장, 1959~1961년 대법원 판사, 1961~68년 대법관, 1968년 변호사, 1972년 법률구조협회 이사를 맡았다.

권오병(1918~75)은 1942년 와세다대학 법학부 졸업, 이듬해 고문 합격, 1945년 부산지청 검사, 1953년 대검찰청 검사, 1663년 법무부 차관, 1965년 문교부장관, 1966년 법무부장관, 1969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법학자로 저술도 하였다.⁵²⁾

나항윤(1918~97)은 1940년 와세다대학 재학중 고문에 합격하여, 194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해방을 맞았다. 194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54년 전주지방법원장, 1959년 대법원 판사, 1973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주운화(1918~96)는 1941년 유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45년 청주지청 검사, 1947년 충주지청장, 1955년 춘천지청 검사장, 1962년 대검 차장검사, 1964년 대법원 판사, 1969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후일 법학자로 활동한 일본유학과 출신, 예컨대 도쿄제대 출신으로 정광현, 유기천, 이한기, 김기두 등이 있다.⁵³⁾

52) 자세히는 김이조, <33인의 법조인상>, 법률출판사, 1999, 13~19쪽.

53) 이들에 대해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 서울대출판부, 2007.

Ⅲ. 일제하 한국법률가들의 평가

한 인간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당한가는 항상 의문이다. 그러나 공적으로 시대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자처벌법> 제5조는 일제시기 고등관 3등급 이상, 훈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는 현직에서 물러나게 규정하였다.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는 185명의 ‘친일’법률가가 수록되어있다. 그 수록경위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현재까지 <조선총독부관보> 등 1차 자료에서 파견된 신민지시기의 판검사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는 모두 484명이다. 이 중 다른 분야 중복경력자와 보류자를 제외한 185명이 판검사의 대표경력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보유편 수록 대상자는 14명으로 2006년 4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 2차 명단 발표시 누락되었다가 이후 판검사 경력이 확인된 사람이나 창씨명만 확인되었던 판검사 중 조선인 본명이 확인된 사람들이다. 명단발표시 빠졌거나 이후 친일행적이 확인된 사람들은 모두 보유편에 수록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법관료도 같은 형태로 처리할 예정이다. 대상자에는 해당하나 보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유보된 경우이다. 첫째, 재직기간 문제이다. 1910년대 이전에 판검사로 임용되었다가 다시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임용된 사람 중 1912년 3월 이전에 그만둔 사람들은 보류했다. 일제의 사법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이 1912년 초이므로 이 기간은 일종의 과도기로 설정한 것이다. 둘째, 반일운동과 관련한 활동이 있는 경우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과 서훈심사기준 가운데 선친일(先親日) 후항일(後抗日)의 경우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예를 원용하였다. 셋째는 반일운동과 관련한 변호활동이다. 사전에 수록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신민지배에 협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민지배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지원한 변호활동은 판검사로서 신민지배에 협력한 친일행위를 직접 상쇄시키

지는 못하더라도 참작사유가 된다고 보아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그러나 반일운동의 변호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친일행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수록대상에 포함하였다.⁵⁴⁾

한 마디로 ‘친일파’ 법률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실 일제시기 판검사의 직위에 있었다면 한국인의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변호사로 있었다 해도 한국인을 위할 수만은 없었다. 법률가란 기본적으로 체제옹호적인 직업인이다. 당시 판검사의 직책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친일로 평가되고 있다. 친일에 대해 해방직후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격해지는 것은 어쩔 우리의 현실이 남북분단과 정치적 대립으로 개방적, 관용적이지 못하게 전개되는 사회심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같이 보인다.⁵⁵⁾

아무튼 일제시기에 형성된 법률가 ‘계급’이 해방 후에도 미군정에 의해 유입되어 대한민국 법조의 초석을 이룬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의 해방후 이력을 보면 일제시기의 이력과 거의 모두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 현대한국사회에서 지적 엘리트로서의 법률가 직업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는 자기들의 식민통치를 위하여 사법운명을 전적으로 일본인 법률가들에게 맡기고 구색으로 한국 법률가를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임명하는 꼴이었다. 제도와 결정권을 빼앗겼으니 한국인 법률가로서는 그나마 그 속에 끼어들어 부여된 법률가로서의 권한을 주장하려 할 수 밖에 없었다.

54)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2009, 1권, 34~35쪽.

55) 춘원 이광수는 ‘친일파의 변’에서 해방직후 미군장교 2인이 방문하여 한국에서 한 사람의 친일파도 만나지 못했으며 40년 동안 조직적인 일본통치하에서 조선인이 협력(coperate)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말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로마시대의 망각법(Act of Oblivion)이나 미국의 사면법(Law of Amnesty)같은 법을 만들어 불문에 붙이고 민족화합으로 나가야한다고 했다. 결국 그리 되지 못하였지만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다. 최중고, 춘원과 법: 그의 법경험과 법사상, <춘원연구학보> 1호, 2008, 199~220쪽. 남북분단으로 남북된 법률가는 187명으로 파악된다. 자세한 김태훈, 전시 납북자 및 법조인 납북자의 실상, <6.25전쟁 제60주년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2010.6.22, 전쟁기념관) 자료집, 170~208쪽. 사회심리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박지향, <윤치호의 협력일기>, 2010 참조.

정치가가 되는 길은 막혔으니 법률가라는 자그만 방패와 무기를 갖추는 것이 호신의 방책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법과나 의과를 강권하였던 것이다. 해방후에도 일본법문화의 잔재, 즉 법전, 법이론, 판례 등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⁵⁶⁾

결 론

이상에서 일제시기를 중심으로 175인의 한국인 법률가들의 활동 내지 이력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소수의 예외는 있으나 대체로 평탄한 삶의 직업인이었다. 일본 고등문관시험과 조선변호사시험에의 합격이 그들의 일생을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민족사와 함께 독립운동, 좌우이데올로기, 문학과 종교 등 다양한 정신세계의 면모도 없지 않다. 친일파다 항일파다 하는 구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을 통해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기초를 놓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들의 생애와 사상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법조사와 법문화를 아는 길이다. 이 글은 지면제한으로 이력만 간략하게 서술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자료의 불충분으로 언급하지 못한 인물도 있다. 인물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

주제어 : 일제시기, 한국 법률가, 법관양성소, 경성법학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친일파

56) 이것은 한국의 식민지연구와 법사상사, 법사회학 등 광범한 연구의 주제이다.

참 고 문 헌

- 고재호, <법조반백년>, 박영사, 1986
권덕주, <육서심원연구자료>, 해돋이, 2005
김이조, <33인의 법조인상>, 1999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민음사, 2001
법 정, <달이 천강에 비치리(효봉선사의 지취)>, 1960
변영만, <변영만전집>, 성균관대출판부, 2006
선우중원, <사상검사>, 계명사, 1992
_____, <격랑80년>, 인물연구소, 1998
이수성, <신뢰와 희망>, 나남, 1997
이영근 외, <법에 사는 사람들>, 삼민사, 1984
이영석, <정구영회고록>, 중앙일보사, 1987
이 인,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출판부, 1974
이정화, <그리운 아버님 춘원>, 우신사, 1990
이회창, <아름다운 원칙>, 김영사, 1997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0
최종고, <사도법관 김홍섭>, 육법사, 1975
_____,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1882
_____,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5
_____, <한국법사상사>, 서울대출판부, 2006(년판)
_____, <한국의 법률가>, 서울대출판부, 2007
_____, <한국의 법학자>, 서울대출판부, 2007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2009
이시영, <감시만화>, 일조각, 1983
허근욱, <민족변호사 허헌>, 지혜네, 2001
현석호, <한 삶의 고백>, 1986
홍종민, <역사의 수레바퀴 속으로>, 1992

Roles and Evaluation of the Korean Lawyers during the Japanese Ruling Period

Choi, Chong-Ko*

This article surveys the Korean lawyers, who were acting as the judges, the prosecutors and the attorneys during the Japanese ruling period from 1910 till 1945. It reviews the careers and activities of about 175 Korean lawyers at that time.

I. Korean Lawyers during the Japanese Ruling Period

To make access to those many persons, this article classifies them into 6 categories according to the law schools where they studied.

The first is the old bureaucrats who were not trained in the modern legal sciences. They were nominated as lawyers by the government of the Dae Han Empire(1899~1910).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nominated them as lawyers continuously to the Japanese ruling period since 1910. They were about 10 persons.

Second group is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Officer Training Institute(*Bopkwan Yangsungso*) established by the King Kojong in 1895. This first Korean institution of legal education was transformed into other names afterwards since 1911. The graduates who became lawyers were about 15 persons.

Third group was the persons who studied abroad in Japan rather early. Those who were born before the annexation were about 18 persons.

Since the Japanese annexation in 1910, there were four main institutions of legal education:

1) Kyung Sung Professional College of Law(*Kyung Sung Bophak Jeonmunhakkyo*)

The graduates of this college(1922~1945) were 1347 persons. Among them we see about 55 persons, who were acting as lawyers.

*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resident of Korean Biographical Society

2) Bosung Professional College(*Bosung Jeonmun Hakkyo*)

The notable lawyers who graduated from this college were 5 persons like Om Shik, Huh Hun, Chung Chunmo, Chung Kuchang and Lee Hojung.

3) Keijo Imerial University

This University(1926~45) produced 714 graduates of law students. Among them, we see 21 lawyers from these alumni.

4) Study Abroad Group

The Korean lawyers who studied in Japan since 1910 were about 50 persons.

II. Evaluation of Korean Lawyers

According to the *Gazette of The General Gouverment(Kwanbo)* the number of Korean lawyers who were nominated as the judges and the prosecutors during the Japanese ruling period were 484 persons. The recently published *Dictionary of the Pro-Japanese Persons(Chinil Inmyong Sajeon)* in 2009 contains 185 'pro-Japanese' lawyer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the Anti-national Collaborators(*Banminjok Haengwija Chobolbop*) of 1948 prescribes that the high officials over 3rd grade and the prize-receiver over 5 grade must be dismissed from their official posts. However, the current legal professionals could continue to be the judges and the prosecutors, because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ing ordered them to stay at the current posts.

Therefore, the “pro-Japanese” Korean lawyers became, good or bad, the frontiers or the stepstones of the judiciary and legal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45.

<p>Key Words : the Japanese Ruling Period, Korean Lawyers, Judicial Office Training Institute, Keijo Imperial University, Pro-Japanese Collaborator</p>
